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13
----------	-----

2017. 10. 24(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봉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3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봉순 의원)

가. 제안사유

- 건축물 및 공간조성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범죄예방 환경설계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원칙 (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안 제5조)
-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안 제6조)
- 범죄예방 적용대상 등 (안 제7조)
-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금번 제정조례안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범죄 발생 빈도의 증가로 인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도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특히,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 인륜적 범죄” 등의 증가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며, 범죄에 대한 안전 생활공간은 도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안 제3조(기본원칙)과 제4조(도지사의 책무)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과 도내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둘째,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셋째, 안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범죄 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넷째, 안 제7조(적용대상 등)에서는 제6조에 따라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 다섯째, 안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 여섯째, 안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제10조(교육 및 홍보)에서는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활성화 및 교육·홍보에 대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금번 제정조례안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하여,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됨.

○ 다만, 동 조례안 제7조 2항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의 건축위원회와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안번호	제 713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359회)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발 의 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9월 29일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3
----------	-----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발 의 자 : 박봉순, 최광옥, 연철흙,
박한범, 이연구, 임병운,
이종욱

1. 제정이유

- 건축물 및 공간조성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범죄예방 환경설계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원칙 (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안 제5조)
-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안 제6조)
- 범죄예방 적용대상 등 (안 제7조)
-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 나.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다. 입법예고 : 2017. 9. 20 ~ 9. 25(5일간)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활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예방·방어적인 구조로 조성·변경·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적 접근과 노출을 최대화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조명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물리적·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공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주민의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주민의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고 안전성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조성된 공간과 건축물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범죄예방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킨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도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도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 사업
4.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5. 그 밖에 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회의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 관련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 자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도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장 변 상 천